



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

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교수

협동조합의 특성

자발적 결성

공동의 소유

민주적 운영

협동조합의 7원칙

누구나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

출자한도 제한 및 1인 1표 제도

공동의 투자(출자금)

조합의 자율적 운영

조합원의 교육, 훈련 및 정보 제공

협동조합 간의 협동

지역사회에 대한 기여

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

협동조합

조합원

개인의 출자한도 제한(1인 최대 30%)

1인1표

다수의 평등한 운영

주식회사

주주

출자 무제한

1주식1표

소수 대주주의 운영

설립근거

- 협동조합기본법 (2016년, 기획재정부)



협동조합의 종류

- 일반협동조합 (영리)
 - 출자금을 낸 조합원 최소 5명
- 사회적협동조합 (비영리)
 - 출자금을 낸 조합원 최소 5명
 - 2가지 이상 조합원 유형

사회적 협동조합

- 법인격 : 비영리법인
- 설립 :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
- 사업 : 주사업 40% 이상 수행
 - 지역사업, 취약계층 고용,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, 위탁사업, 기타 공익증진형
- 경영공시 : 의무
- 법정적립금 : 잉여금의 30/100 이상(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)
- 배당 : 배당금지
- 청산 : 국고 귀속

영리와 비영리

영리

-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

비영리

-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.
- **단, 부수적으로 영리사업 가능**
-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,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투자

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

- **지역사업형**
 -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
- **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**
 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- 취약계층 고용형
 -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
- 위탁사업형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기타 공익증진형
 -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

경영공시

- 대상 : 모든 사회적협동조합
- 내용
 -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
 - 사업결산보고서
 -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
 - 사업결과 보고서

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

- 법정적립금
 - 사업손실 보전만을 위해 사용
- 임의적립금
 - 정관에 규정 필요
 - 사업의 준비, 시설확장, 사업의 활성화, 결손보전 등 용도 불문
-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
 - 미처분이월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

청산

- 청산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은 국가,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귀속
-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산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
 - 출자금은 탈퇴시 전액 반환

사회적협동조합의 장점



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의
전환



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(서울
시의 사례 참고)



대외이미지 제고로 기부 등
후원 증가 기대



다양한 사업 연계 및 영역
확장 가능 및 규모의 경제
실현 가능

사회적협동조합의 단점



의사결정 과정의 비용 증가



총회, 공시 등 법인 관련 업무
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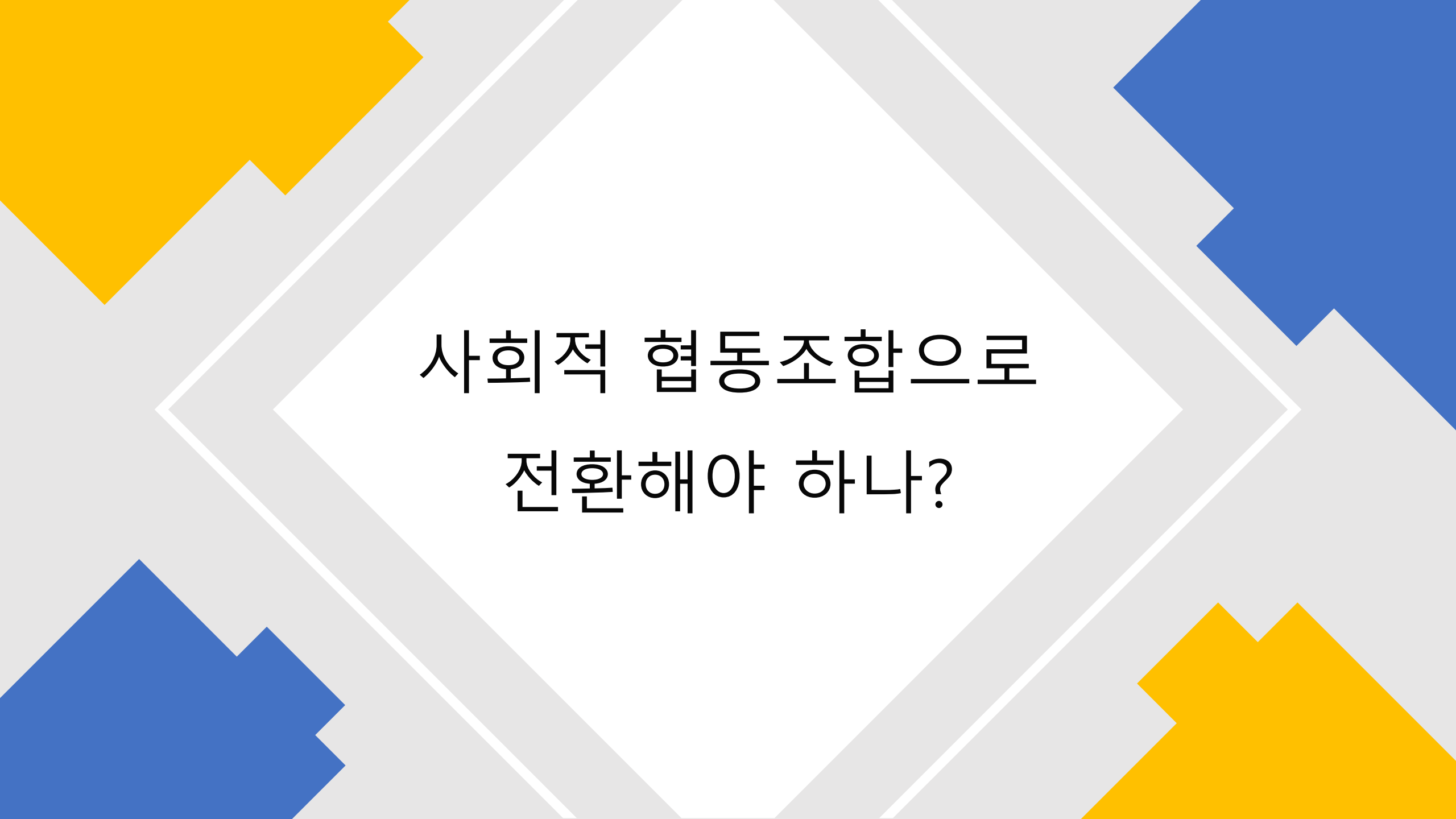


조합원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
보상 불가



의문점이 있다면

- 지자체의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 -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☎ 1544-5077
 -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☎ 053-942-8001



사회적 협동조합으로
전환해야 하나?